

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(소각장) 광역화 조성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49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7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환경부의 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」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·운영 시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 진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.
- 나. 광역소각장으로 조성 시 설치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더 높음
(단독 조성 : 사업비의 30% / 광역 조성 : 사업비의 50%)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21. 7월)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,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, 공공 소각시설 조성이 불가피함
- 나. 이에 공공 소각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, 환경부 우선 권고사항임에 따라,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광역소각장으로 진행하고자 함.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47조
- 나. 폐기물관리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, 토지보상비(전액 김포시) 등 예산 수반
- 나. 예산 조성 비율
- 광역시 : 국비 50% / 도비 15% / 시비 35%(김포시 + 광역 지자체)
 - 단독시 : 국비 30% / 도비 21% / 시비 49%(김포시 전액)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추진현황

- 1) 2022. 9. ~ 2023. 2: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·공고(1~2차 진행/후보지 3곳)
- 2) 2023. 3. ~ 8. :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(1~4차)
- 3) 2023. 4. : 입지타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- 4) 2023. 10. ~ 11 : 주민설명회 개최
- 5) 2024. 2. :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
- 6) 2024. 7. :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

나. 향후일정

- 1) 2024. 8. :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장) 입지 결정·고시
- 2) 2024. 10. :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(환경부→기재부)
- 3) 2024. 12. : 국고보조금 사전협의 및 신청
- 4) 2026. 8. :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
- 5) 2027. 5. : 공사 착공
- 6) 2030. 6. : 공사 준공

소관 실·과·소		자원순환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자원순환과장 이정미
	팀장 직위·성명	자원시설팀장 하재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 지연정(☎2771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(주요 사항 위주)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1항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
- 그 외 관련법 의거 행정절차 이행시 발생하는 비용

나. 비용 발생 요인(주요 사항)

- 일일 100톤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
- 소각시설 착공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실시
- 소각시설 착공 전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용역 실시 등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소각장 건립추진에 따라, 일정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비용 발생(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)
- 국, 도비 보조금 및 타 지자체 부담 비율(광역소각장 조성 시)만큼 우리시로 비용 산입

나. 비용추계결과(광역 조성 시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2024년 (기투자포함)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 (이후까지)	계
총 소요액	합계	297	18,000	37,339	21,855	272,509	350,000
	국				13,746	136,254	150,000
	도				4,124	40,876	45,000
	시	297	18,000	37,339	3,985	95,379	155,000
소각시설	합계	297	2,830	2,509	18,705	225,659	250,000
	국				12,171	112,829	125,000
	도				3,651	33,849	37,500
	시	297	2,830	2,509	2,883	78,981	87,500
주민편익시설	합계				3,150	46,850	50,000
	국				1,575	23,425	25,000
	도				473	7,027	7,500
	시				1,102	16,398	17,500
토지 등 보상 (전액 김포시)	합계		15,170	34,830			50,000
	국						
	도						
	시		15,170	34,830			50,000

※ 광역으로 조성할 경우의 비용추계임(국비 50 / 도비 15 / 시비 35 [김포시 + 광역지자체])

- 시비의 경우 소각시설 + 주민편익시설의 총 비용(105,000백만원 / 노란셀) 중 광역 협의 비율에 따라 분담 예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국비 및 도비 보조금

- 광역소각장 조성 시 해당 지자체 부담비(협의 비율)

- 시 자체 사업비

※ 장기간에 걸친 사업인 만큼 각 년차별 행정절차 수반에 따른 필요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(예산과 협의 필)

3. 작성자 : 환경국 자원순환과 과장 이정미 팀장 하재헌